

부산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222759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A

변론 종결 2016. 7. 19.

판결 선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4. 4.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한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림중공업'이라 한다)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손해배상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한림중공업,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4. 3.24.부터 2015. 3.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C이 한림중공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한림중공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C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한림중공업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그 후 C의 한림중공업에 대한 2014. 4. 25.부터 2014. 9. 5.까지 발생한 선급금반환채무의 합계액이 175,260,000원에 이르고, 한림중공업이 2014. 11. 6. 위 선급금반환채무의 합계액에서 한림중공업의 외상매입금채무 공제하고도 12,231,650원을 149,768,350원의 선급금반환채무가 남게 되자, 한림중공업은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4. 12. 3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근저당권 설정

B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4.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마쳐 주었는데,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 산와대부 주식회사, 경남제일신용협동조합,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또는 대출금 및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2014. 9. 5. 한림중공업에 대하여 175,260,000원의 선금금반환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B가 2014. 8. 19.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2. 5. 15.부터 2014. 8. 1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B에게 합계8,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당시 피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C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나 1-1~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제207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3층 제301호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49.5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43431.2㎡

대지권 종류 : 소유권

대지권 비율 : 4343120000분의 2822146 -끝-

